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20
----------	-----

제출연월일 : 2007. 5. 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관용차량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용차량관리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호중 “시장”을 각각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중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제22조”를 “제22조 단서”로 한다.

제3조제3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를 “「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한다.

제3조제6호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3조제4호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6호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② (생략)</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u>시장이</u>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대전광역시장----- -----</p>
<p>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 <u>시장은</u>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특호 라목을 적용한다.</p> <p>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u>계급별로</u>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p>	<p>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 대전광역시장 ---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u>을 준용하되, <u>공무원여비규정을</u>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중 <u>소속장관</u>은 각각 “<u>시장</u>”으로 본다.</p> <p>2. (생략)</p> <p>3.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u>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u>”는 “<u>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u>”로 본다.</p> <p>4. ~ 5. (생략)</p>	<p>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p> <p style="text-align: center;">-----영-----</p> <p style="text-align: center;">-----영-----</p> <p>-----</p> <p>1. -----제22조 단서----- ----- -----대전광역시장-----</p> <p>2. (현행과 같음)</p> <p>3. -----「공용차량관리규정」-----「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p> <p>4.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6. 영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p>	<p>6. ----- ----- ----- ----- -----<u>전문계약직공무원</u>----- ----- ----- ----- -----</p>

# 《관 계 법 령》

## □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관용차량의 구분) ① 관용차량은 이를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및 특수차로 한다.

② 승용차는 이를 중형승용차·보통승용차 및 소형승용차로 구분한다.

③ 승합차는 이를 보통승합차와 소형승합차로 구분한다.

④ 화물차는 이를 보통화물차·소형화물차 및 3륜차로 구분한다.

⑤ 특수차는 특수한 장치를 한 특별용도의 차량을 말한다.

⑥ 관용차량은 전항의 구분외에 이를 용도별로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3.29>

## ○ 부 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 을 “공용차량” 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 을 “공용차량” 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 을 “공용차량관리규정” 으로 한다.

## □ 공무원여비규정

###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②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2, 2006.3.29>

## □ 대전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4일 대전광역시장
2. 회 부 일 자 : 2007년 5월 7일
3. 상 정 일 자 :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5. 21)  
상정,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 1. 제안이유

「관용차량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제3조).

## III.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한봉전)

### ○ 본 조례 안은

공무원 여비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관계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2003년 폐지된바 현시점에서라도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행스런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조례의 적법성 및 조례 개정의 신속성 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개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IV. 토 론 요 지 : 생 략

V. 질의답변요지 : 생 략

VI.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